

## 구조전문위원회 (서면)심의 주요결과

•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	심의일자	2023. 5. 22. ~ 5. 31.
건축종별	[ <input type="checkbox"/> ]신축, [ <input type="checkbox"/> ]증축, [ <input type="checkbox"/> ]대수선, [ <input type="checkbox"/> ]기타		
건축주	조일○○○		
대지현황	대지위치 :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		
	지번 : 817번지	관련지번 : 817-7, 817-8	
	대지면적 : 3,976.2㎡	용도지역 : 준공업지역, 미포국국산업단지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: 3,160.67㎡	건폐율 : 79.49%	층수 지하 : / 지상 : 3층
	주용도 : 공장	구조 : 일반철골구조	세대수(호)/동수 : 세대 / 1동
	최고높이 : 15m	용적률 : 83.85%	연면적 : 3,334.15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
	종합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거셋플레이트와 앵글의 용접이음 검토서 및 볼트이음 검토서를 제시할 것 - (참고사항) 펄린의 경우 허용응력설계법인 AIK CFSD98로 검토하였고, 충분한 내력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, 이후 설계 또는 검토에서는 KDS 41 30 30 냉간성형강 설계기준을 적용바람</li> <li>○ 주골조 부재에 대한 사용성을 검토할 것 - 구조계산서 풍하중/지진하중에 대한 횡변위만 검토됨</li> <li>○ 용접(공장용접포함)부재의 강재 규격은 SN275 또는 SM275를 적용할 것 - 모든 부재 SS275를 사용함</li> <li>○ 횡력저항시스템 철골보통중심가새 (R=3.25) 적용 - 강구조일반규정만을 만족시키는 철골구조시스템 (R=3.0)을 적용하거나 KDS 14 31 30 4. 1. 7에 의거 비부록 C. 1. 5에 기술한 사항을 만족하는 근거를 제시할 것</li> <li>○ KDS 14 30 10 4. 1. 8 세장비 제한 규정에 적합하게 RRACE 규격을 재검토할 것.(RBR1-L, WBR1-L 등)</li> <li>○ 철골부재 설계 과정 중 좌굴길이 재확인 바람</li> <li>○ 구조계산서에 페이지와 목차에 페이지 번호 기록할 것</li> <li>○ 추후 지붕부분에 태양광설비 설치계획 여부 확인</li> <li>○ 지속적인 구조관련 기술협력 업무 수행을 통해 시공시 발생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원구조설계자와 구조감리업무에 대하여 수행 필요 판단.</li> <li>○ 기초조건이 900KN/EA로 검증되지 않고 가정만 되어있으므로 공사 진행시 현장에서 확인 필요함.</li> <li>○ 부재 F1에서 Ø500 파일이 2개 인데 허용지지력이 700KN이고 부재 F2에서 Ø500 파일이 1개 인데 허용지지력이 700KN임. 확인이 필요함</li> <li>○ 도시미관과 주민 안전을 도모하고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사료됨.</li> <li>○ 주차장으로 이용 시 노면표시 등 진·출입구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하여 보행자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고,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함.</li> </ul>	
심의결과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 <input type="checkbox"/> ] 원안 의결    [ <input type="checkbox"/> ] 조건부 의결    [ <input type="checkbox"/> ] 재검토 의결    [ <input type="checkbox"/> ] 부결</p> <p>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</li> <li>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</li> <li>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</li> <li>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</li> </ul>		